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845

발의연월일: 2024. 12. 23.

발 의 자:이종배·김미애·김예지

성일종 • 박형수 • 김소희

진종오 • 박덕흠 • 김성원

조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 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

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법률 제 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지원할"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
정 및 지원) ① ~ ③ (생 략)	정 및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	4
항에 따른 청년창업형 후계농	
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	
계어업경영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의 영농 또는 영어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	
을 조건으로 하여 생활 및 영	
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이하 이 조에서 "영농영어정	
착지원금"이라 한다)을 <u>지원할</u>	<u>5년 이상 7</u>
수 있다.	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
	<u>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u>
	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